

# 고문헌(古文獻)의 해석 · 고찰에 따른

## 건축사학(建築史學) 전개의 재고소론(再考小論)

(주거에 관한 문헌 중심)

朴 彦 坤

<弘益大學校 建築學科 教授>

『三國史記』屋舍의 「室長廣」

『旧唐書』의 「長坑」

『朝鮮王朝實錄』明宗十의八年

二月四日의 「御室溫突床下」

『三國史記』屋舍의 「床」

結語

### <서(序)>

한국(韓國)의 고대(古代) · 중세(中世) · 근세(近世)를 이어온 건축양식(建築樣式) · 기술(技術) · 기법(技法) 배경(背景)과 의미(意味)등의 분석(分析) · 정리(整理) 및 편년(編年)을 위(爲)한 연구업적(研究業績)은 질적(質的)으로나 양적(量的)으로 커다란 성과(成果)를 이루워 놓았다. 더구나 관(官)과 학계(學界)의 실질적인 발굴과 실측조사 업적은 건축사학뿐만이 아닌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축사료(建築史料)들 중에는 현존건물이 고려말과 조선초의 몇 동을 제외하고는 임진왜란 이후의 건물이 대부분인 관계로 고대와 중세를 연결하는 건축편년의 어려움이 한국건축사학의 난제인 것이다. 즉 조선조 중 · 말기의 주택이나 건축이나 건축물이 시대와 지역배경을 함유한 건축사 자료들과 관계지어진 전개과정에서의 유산물임에 불구하고 현존물자체가 고대 및 중세물로 오인하는 위험을 종종 가져온다. 특히 주거에서는 주택구조 및 형식과 생활이 함께하고 주택의 수명이 길지 못한것과, 소유자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수리 · 증축이 용이하므로써 고대 및 중세의 주거에 적용연구는 조심성을 요한다. 건축의 기본전통성은 주택에 있고 주택은 생활양식에 의해 성립되므로 주거의 전통성이 한국전통건축의 근원이라고 간주된다. 현존전통주택과 생활양식은 적어도 19세기 현재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중세 이전과는 다른것임에 틀림없겠다.

본고에서는 상기의 이유로, 수천년의 주거 변천과정을 편년하는데 필요한 고대 및 중세의 한국건축 전통성을 입증하는 기본 고문헌(古文獻)의 해석 고찰이 정론(正論)없이 인용되고 있음을 재삼 조명 하여 바른 전통성에 접근하고자 목적을 둔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屋舍)의 「실장광(室長廣)」

고대주거건축에 관한 실질적인 유구(遺構)는 없이 고분벽화 · 가형토기 그리고 발굴된 주거 흔적지가 있다. 그 중 구체성을 가진 사료로서는 가형토기 이나 그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료

와 함께 건축관계 중요 고문헌은 『삼국사기(三國史記)』가 우리나라 최고문헌(最古文獻)이다. 그 기본 문헌에서 공간구성(空間構成) 및 조형(造形)과 생활양식의 해석 고찰이 분분한 점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삼십삼(卷第三十三) 잡지(雜誌) 제이(第二) 옥사(屋舍)에서 주거 규모제한 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진골(眞骨). 실장광부득과이십사척(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육두품(六頭品). 실장광부득과이십일척(室長廣不得過二十一尺).

오두품(五頭品). 실장광부득과이십팔척(室長廣不得過二十八尺).

사두품지백성(四頭品至百姓). 실장광부득과이십오척(室長廣不得過二十五尺).

당시 주택의 규모와 조형에 직접관계있는 「실장광(室長廣)」의 해석이 중요하다.

「방의 넓이」「방의 크기나 넓이」「방의 장광(長廣)」「실의 크기가 길이나 그폭」「실규모는 정면과 측면의 길이」「실의 넓이는 사면이」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같은 해석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제시한다.

첫째로 「실(室)」을 동(棟)으로 해석하여 한재의 규모로 보거나 방(房)으로 해석되어 방의 규모제한 중 어느 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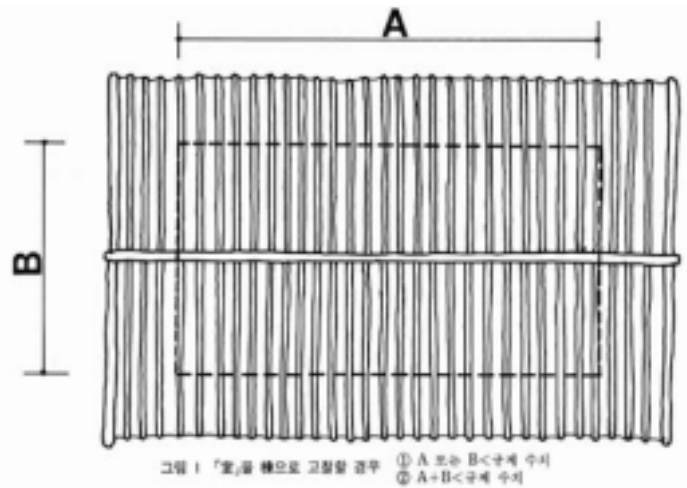


그림 1 「실(室)」을 동(棟)으로 고찰할 경우 ① A 또는 B < 규제 수치  
② A+B < 규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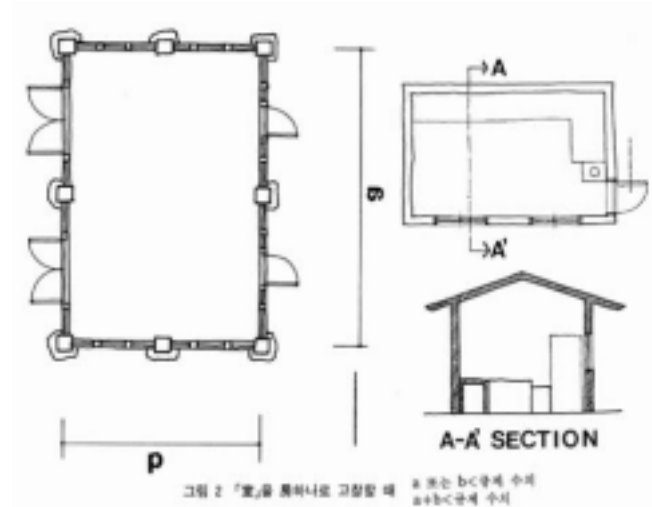


그림 2 「실(室)」을 방(房) 하나로 고찰할 때 a 또는 b < 규제 수치  
a+b < 규제 수치

둘째로, 제한 수치가 한변의 길이나 또는 2변의 합이나 나아가선 방넓이의 규제냐의 규명이다.

한채에 방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1동(棟)1실(室)1기능(機能)은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또는 사찰건축에서 공통된 특성이나 주택에서는 한채내에 2~3이상의 공간으로도 나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분제도에 따른 법규가 내부의 방하나 하나의 규모를 제한함은 그 목적이 다른 것이 기도하며, 중국과 한국고대에서 실(室)이란 건물(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점을 참고로 하면 방이아닌 동(棟)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최소의 규모 즉 15척(尺)을 넘기면 안되는 사두품(四頭品) 및 百姓의 주거를 보면, 당시에 당척(唐尺)이 사용됐을테지만, 길이와 폭의 합이 15척(尺)이하라고 해석되면 주거성립 주택이 어려움을 가진다. 발굴된 수혈주거지도 대개 긴변이 4m 이상이 되고 있으며 서민이하의 주거에 부엌 또는 온돌구조를 의식하면 더욱 두변의 합으로선 백성이하계급의 주택성립이 어렵다. 따라서 「실장광(室長廣)」이란 집의 길이나 또는 폭(정면이든 측면이든) 어느 쪽이든 신분에 따라 24척(尺), 21척(尺), 18척(尺), 15척(尺)을 넘지 못한다고 고찰함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상류신분(上流身分)과 서민(庶民)과는 그 생활방법이 다르고 주택형식도 차이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면, 상류신분계급은 1동(棟)1실(室) 주택을 여러개 지을수 있으며 서민이하에선 1동내(棟內)에서 주거의 시설을 모두 갖추워야함을 참고하면 상류계급의 주택제한이 아닌 서민주택제한으로 신분권 위주의 보호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헌(文獻)은 사두품이하(四頭品以下)의 주거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동(棟)의 한변길이의 제한으로 해석되나 그 생활공간구성 및 생활방법은 단언이 용이치않다.

### 『구당서(舊唐書)』의 「장갱(長坑)」

우리나라의 온돌은 한국주거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고 있다. 신을 벗고 좌식생활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의 공간구성과 동선을 그리고 주택조형성을 결정지워준 원인이 온돌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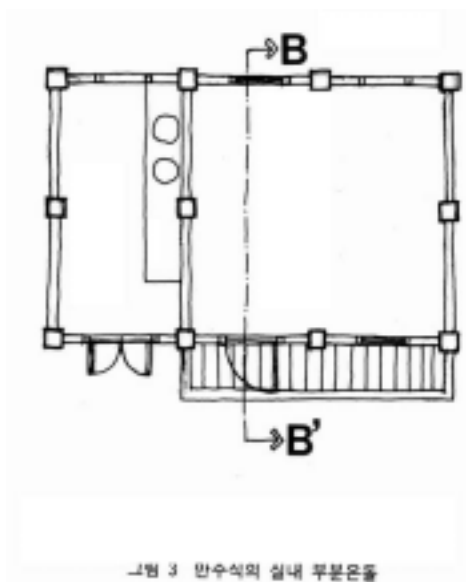


그림3 만주식의 실내 부분온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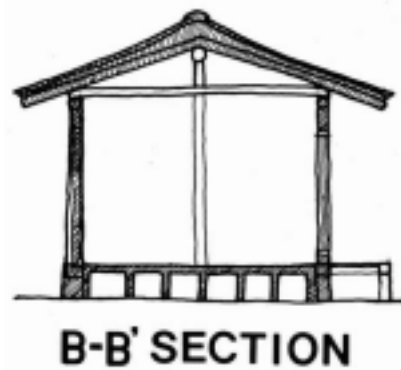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실내 전면 온돌

그림 4 한국의 실내 전면 온돌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온돌 흔적지로는 함경북도 웅기군에서 발굴된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 한민족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를 이주하였다면 만주의 온돌이 한국식온돌 형식일 것이다. 그러나 북경이북에 존재하는 온돌은 우리나라의 방전면온돌과 다른 부분온돌이며 특히 좌식생활이 아닌 입식생활에

준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國內城)지역의 길림성(吉林省) 집안(輯安)에서 발굴된 고구려 건물지에 완전한 온돌흔적이 있다. 이는 벽을 따라 구성된 부분온돌 즉 중국만주식 온돌이다. 방의 전면 온돌과 차이는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의 주거방식을 좌우하는 원인이 되기에 그 전개과정의 중요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재고(再考)해 볼 문헌(文獻)으로 널리 알려진 『구당서(舊唐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高句麗)의 기록이 있다.

「기속빈구자다(其俗貧窶者多), 동월개작장갱(冬月皆作長坑), 불연온화이취애(不燃溫火以取暖)」

앞에서 기술한 바 있는 고구려(高句麗)의 집안건축지(輯安建築地)에 만주식 부분온돌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구당서(舊唐書)의 「장갱(長坑)」이 지금과 같은 방(房)바닥의 전면(全面)온돌이 아닌 부분온돌이었음을 부정할 단서는 없지 않은거다. 만일 만주식 부분온돌에서 우리나라의 주거양식이 시작됐었다면, 고대에선 입식생활이었다는 가정이 된다. 그러던중 한민족의 생활습관에서 좌식생활에 적당한 전면온돌로 개량되었다는 과정이 성립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생활도에서, 상류계급의 생활양식이지만, 무용총(舞踊塚), 각저총(角抵塚) 등에는 가구를 사용한 입식생활도가 그려져 있다. 만주 길림성(吉林省)의 옛고구려 수도였던 통구(通溝)의 고분벽화이며, 인접된 집안(輯安)의 고구려 건물지의 부분온돌 흔적과 공통됨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한국온돌의 발전과정과 전통생활양식을 구당서(舊唐書)의 「장갱(長坑)」이란 온돌용어로 인하여 주거의 전통성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부자연스러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온돌구조 전개와 전통생활양식변화의 치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명종십팔(明宗十八年) 이월사일(二月四日)의

「어실온돌상하(御室溫突床下)……」

『구당서(舊唐書)』 고구려에서 서민생활상에 빈구자(貧窶者)가 온돌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려왕조(高麗王朝)때 송(宋)의 서궁(徐兢)이 개경(開京)에 1개월간 머무른 견문(見聞)을 모은 『고려도경(高麗圖經)』 제이십팔권(第二十八卷) 와담(臥榻)의 기록도 비슷한 내용이다.

「약민서척다위토담(若民庶則多爲土榻), 혈지위화갱와지개(穴地爲火坑臥之蓋),

기국동월극한(其國冬月極寒), 복소속서지속이(復少續怨之屬爾)」

고려 인종원년(仁宗元年)(1123)에 중국의 사신으로 왔던 서궁(徐兢)의 눈에 비친 온돌바닥 생활이 신기한 듯 표현했다. 그런데 온돌 생활은 서민층이었고 그 이유는 경제적 사정, 즉 숨·면이 풍부치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즉 온돌이 상류상회의 생활습관이 아닌것이였음을 고찰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잘알려진 문헌으로 조선왕조 중기의 문인 이익(李瀾)(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침어판청(寢於板廳)에 다음과 같이 문장이 있다.

「……증문제기자(曾聞諸耆者), 퇴계백년전(退計百年前), 공향귀가광택중(公鄉貴家廣宅中), 유난돌불과이일간(有煖燠不過一二間) 위로병소처(爲老病所處)……」

연세든노인들게 들은바 100여년전쯤에는 사대부집에는 온돌이 노병을 위해 한두칸 있었다는 내용은, 적어도 17세기중엽까지는 상류사회신분 주거에서 온돌방 생활양식은 위주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열거한 고문헌(古文獻)의 『구당서(舊唐書)』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기록된 서민생활과 온돌관계는 상통성이 있으며 특히 상류신분에서는 온돌생활이 아니었고 기후조건에 따른 편리성 때문에 서민주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고대부터 적어도 조선중기까지의 상류사회에서는 온돌이 아닌 마루나 다른 바닥주거였던 것이다. 즉 온돌은 서민의 상징적 주거이며 상류신분에서는 의식적으로 온돌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권위성 유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실록』 명종십팔년(明宗十八年)(1563)이월사일(二月四日)

「계일(啓日) 초사일야(初四日夜) 어실유화변(御室有火變)」이라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어실온돌상하(御室溫突床下) 예입화기이취온기(例入火器以取溫氣) 필선이방전포상하(必先以方塼布床下) 연후입치화기(然後入置火器) 이내관(而內官) 어초사일(御初四日) 불포방전성화입치불복간(不布方塼盛火入置不得看) 화성철기상판천소지이경(火盛徹器床板穿燒至三更) 염전치발(焰燄熾發)……」

1563년 2월 4일에 임금님 침실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그 이유는 작은 글씨로 서두에 어실온돌(御室溫突)이란 기록으로 인하여 임금침실이 온돌방이었다고 단언하는 것에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화재가 나게된 설명문을 분석하면 일반적인 온돌구조와 크게 다르다.

1. 바닥밑으로 불을 담은 화기(火器)를 넣는다.
2. 화기(火器)를 넣을 때는 먼저 방전을 간다.
3. 불이 성하여 화기(火器)를 넘쳤다.
4. 마루바닥이 타서 구멍이 났다.

온돌구조란 아궁이에서 연료를 태우므로써 방안의 온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 기록에선 때는 것이 아니고 불을 담은 그릇을 바닥밑에 넣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루바닥이 타서 구멍이 났다 라는 내용은 고래를 만들어 구들장을 깔고 진흙으로 편편히하고 마감된 온돌방이 아니고 엄연한 마루방임에 틀림없다. 그 마루방을 바닥밑의 냉기를 없애고 실내의 훈기를 얻기 위해 온돌식으로 바닥밑을 덮었다는 것이지 온돌방이 아닌 것으로 고찰할 수 있겠다.

전술한 성호사설의 기록에 의하면 17세기까지도 사대부주택에선 실제로 온돌방과 그 생활을 서민생활로 인식하고 신분권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온돌주거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권위가 유지되어야 할 왕(王)이 서민의 상징적인 온돌을 쉽게 받아드릴 수는 없던 것이다. 참고통계로 20세기에 현존하는 전통주택을 분석하면 농촌주택 보다는 도시주택, 도시주택 보다는 사대부주택, 사대부 주택에서도 안채보다는 사랑채, 사대부주택 보다는 침전이 될수록 온돌공간이 현저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온돌구조는 서민층으로 신분이 내려갈수록 주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상류신분으로 갈수록 마루공간에 의존하는 생활이 비중이 커짐을 보여준다. 동일주거(同一住居)에서도 권위공간이 표현되는 사랑채 쪽에서 온돌보다 마루공간이 크다. 이와같은 현상은 고대중세 근세의 문헌(文獻)에 기록된 내용에서 온돌이 전통서민주거 라는 것과, 현존상태 분석 수치와 상통하는 내용으로 고찰된다. 따라서 궁궐의 침전에 온돌구조가 구성됨은 의외로 뒤늦게 성립됐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명종(明宗)18년(年)의 화재는 침실의 온돌이 아니고, 이 당시는 사대부주거나 궁궐에선 온돌구조가 권위성 유지에 침해 요소로 의식되어 멀리했던 시기다.

따라서 명종(明宗)18년(年) 왕(王)의 침실을 온돌방으로 해석함은 오해로 볼 수 있겠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屋舍) 「상(床)」

고대 상류신분의 주거양식에 온돌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또는 사용되었다면 그 구조와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규명할 가치가 있다. 고대 주거양식에서 상류계급의 모습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단편을 볼 수 있다. 성급한 결론이긴 하나 생활도에서 가구사용이 많이 표현되고 그것은 입식생활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묘주, 부부상의 정좌 그림이 의자에 앉거나 방바닥에 앉은 것이 아니고 신을 벗고 평상(平床)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많다. 그리고 신분 높은 묘주의 신하 여러명이 하나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도 많다. 고구려 상류신분 주거양식의 단편이기는 하나 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고찰해 볼 때, 집안에 신을 신고 들어가서 평상에는 신을 벗고 올라앉는 좌식과 입식의 절충생활을 엿볼 수 있다. 신라와 고구려의 상류신분주거양식의 차이는 확실치 않으나 먼저 커다란 이질문화 생활은 아니었을 것임은 상식적인 고찰이 된다.

그 문헌자료는, 앞에서 서술된, 삼국사기옥사(三國史記屋舍)에서 고찰할 수 있다.

진골(眞骨) : 상부식대모침향(床不飾玳瑁沈香)

육두품(六頭品) : 상부득식대모(床不得飾玳瑁) 자단침향황양(紫檀沈香黃楊).

진골과 두품신분외엔 「상(床)」의 규제가 없다. 여기 「상(床)」의 해석고찰을 몇 몇보면, 「바닥은 대모나 침향과 같은 고급재로 꾸밀수 없었다」, 「대모와 침향나무로 상(床)을 장식하지 못했다」 「방

바닥에는 대모나 침향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했다」 「마루에는 침향목(沈香木)으로 귀갑문(龜甲文)과 같은 장식을 만드는 것을 금하다」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사학자들은 바닥 즉 마루바닥으로 단언하고 있다.

이 문헌(文獻)의 전후 문장구성 분위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정하는 문양 그리고 사용을 금하는 소재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해석정답이 용이하다.

대모(玳瑁)란 거북의 일종으로 열대해양에 살며 등껍데기를 대모갑(玳瑁甲)이라 하여 공예재료로 쓰인다.

침향(沈香)이란 팔꽃나무과의 상록교목 향료나무로서 유명하며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자단(紫檀)이란 콩과의 상록소교목으로 인도남부에서 스리랑카에 걸쳐서 자란다. 목재가 자주빛으로 박닥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자단이라고 한다. 황양(黃楊)은 상록수의 일종으로 도장이나 지팡이의 재료로 쓰이는 단단한 나무이다.

이들 3종의 목재는 단단하고 색이 있으며 향이 좋은 성질과 열대지방산이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단히 귀한 재료로써 넓은 마루바닥에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이다. 더구나 마루문양을 거북등 문양으로, 또는 거북등 껍질로 장식할 수도 없다는 점으로 보아 이 문헌의 「상(床)」이란 마루바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루바닥이 아니라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상(平床)을 참고로 하면, 신라에서도 고구려와 같이 상류계급에서 평상이 권위·상징의 상징이 있으리라고 보이며 이 문헌의 「상(床)」이란 바로 평상(平床)을 대상으로 함이 틀림없는 것이다.

평상을 생활도구로 사용한 신라 상류계급 주거는 실제로 실내바닥이 마루 또는 흙바닥 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 〈결어(結語)〉

이상(以上)의 몇몇 문헌(文獻)은 그 확실한 해석과 고찰에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古代) 주택구조 조형 및 주거양식의 건축사편년 방향을 이루는 기초 사료(史料)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옥사(屋舍)를 통한 주택의 규모 해석은, 가형토기(家形土器)나 고구려고분벽화 등을 참고로 하여, 구조기술 공간형성 생활방법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옥(屋)」을 동(棟)또는 방(房)으로 해석하는데 따른 차질은 크다. 삼국사기에 기재된 주택제한령으로 볼 수 있는 옥사(屋舍)에선 당시 사회신분계급을 구분한 것이고 농민들의 민가는 엄두에 두지 않은 것 일수 있다. 사두품지백성(四頭品至百姓)급에서 제한내용이 소위 농민·서민에겐 관계되지 않는 것이 많다. 기와, 공포, 담장 특히 「불작대문사방문(不作大門四方門), 구용이마(厩容二馬)」 등은 사회기반이 든든한 지배계급의 주택이며 순수한 서민(庶民)의 민가(民家)는 아님이 틀림없겠다. 따라서 상류계급의 주택령으로 보아, 권위·상징의 외형적 과시제한으로 해석하여 실(室)은 동(棟)으로 고찰함에 가능성이 크겠다. 구체적인 길이 제한은 정면 또는 측면 어느쪽이든 절대치수를 넘을 수 없다는 것으로 고찰됨으로써 주거의 공간구성을 가능케한다.

우리나라의 온돌이란, 앞에서 언급된바 대로, 서민생활의 방법이고 상류신분계급 생활에선 권위성 유지도 이용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시작과 전개과정이 명백히 규명함에 따라 우리 주거사의 편년이 성립된다. 즉, 실내부분온돌(만주식), 실내전면온돌(한국식)의 관계는 입식생활(立式生活)과 좌식생활(坐食生活)의 관계를 내포하고 또 신발·맨발로 실내출입 여부도 관계된다. 서민층의 생활은 관련문헌에서 종합하면 일찍부터 실내전면온돌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류신분 계급에서는 실내부분온돌 또는 온돌이 아닌 바닥을 이용한 고대 생활양식이었다. 『삼국사기』 옥사(屋舍)에서 「상(床)」이란 바닥이 아닌 평상(平床)으로 해석됨은 그와 같은 고찰에 기인하며, 고구려와 신라 또는 통일신라까지 문화의 원류(源流)를 함께 본다면, 고구려 고분벽화의 평상생활이 신라에서도 존재했음은 용이

한 고찰이 된다. 고구려와 신라에서의 사료(史料)를 통해 상류신분의 주거양식은 서민과 다른 바닥구성 공간 구조등이 상호 이질적 문화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같은 현상은 의외로 오래동안 지속하여 고려때는 물론 조선왕조 중기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최고의 권위와 권위의 상징인 궁궐내의 침전(寢殿)이 온돌구조됨은 그리 쉽게 변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명종(明宗)18년(年)(1563)의 침전황재 기록에 따라 온돌상(溫突床)이라고 함은 온돌구조로된 방(房)이 아닌 마루바닥이었으며 성호한설(星湖寒設) 및 조선말 현재의 사대부 주택 실례로 보아서도 상류계급일수록 온돌의 도입은 늦었다.

고대상류계급사회에서는 주택제한령 옥사(屋舍)에서 보이는 평상(平床)제한의(장식) 엄격성은 평상(平床)자체가 권위의 상징을 나타내는 가구이며, 절대적인 공간연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상(床)」을 바닥 또는 마루바닥으로 해석함은 건축사에 큰 오인이 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金正基 「韓國의 木造建築」 우리나라의 주택의 역사 一志社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申榮勳 「韓國의 살림집」 열화당  
 徐兢 「高麗圖經」 亞細亞文化社  
 李瀼 「星湖寒設」  
 「支那史料抄」 景仁文化社  
 「세계대백과사전」 東亞出版社